

학교법인 동서학원

2019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7 인	2 인

1. 일 시 : 2019년 6월 27일(목), 오후2:00~3:25, (회의소집 통보일: 2019년 6월 19일)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가. 참석임원

- 이사(7명) : 박동순, 임효진, 추만석, 양상백, 오병태, 이순걸, 강정호

감사(2명) : 양한석, 문승엽

나. 결석임원

- 이사(1명) : 장제국

- 감사(0명) :

4.회의안건

(1)심의 안건

1)법인 정관변경(안) 심의 건

2)동서대학교

①교원인사규정, 수당규정 개정(안) 심의 건

②2019-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3)부산디지털대학교

①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②교원인사규정, 수당규정 개정(안) 심의 건

4)경남정보대학교

①2019-2학기 경남정보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심의

②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심의 건

5)①사상구노인복지관 본관과 다누림노인주간보호센터의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②사상구노인복지관 본관 2019년 제3차 추경 및 수정사업계획(안) 변경 심의

③사상구노인복지관 본관 및 본관의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안) 심의 건

(2) 보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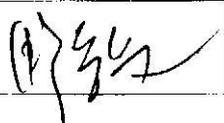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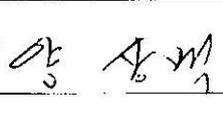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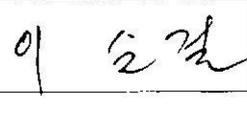
5. 회의내용 :

(1)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됨으로 개회를 선언하다.

(2)이사장이 이번 회의안건은 동서대학교에서 승인 요청한 교원인사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심의 건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가다.

6. 토의 및 결의 : 동서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심의 건

(1)이사장은 동서대학교에서 승인 요청한 교원인사규정(안)과 수당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행정실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간서명 대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2) 행정실장은 준비된 동서대학교 교원인사규정과 수당규정 개정(안) 자료를 이사들에게 배부한 후, 법인정관 제34조(임면), 제40조(보수) 및 제62조(보수)에 근거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강사)와 관련 개정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수당규정은 교직원 직책수당 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신규 보직자의 지급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코자한다고 자세히 설명하다.

(3) 임효진이사가 변경된 내용을 검토한 후, 동서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과, 수당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를 하자, 추만석이사가 재청하고, 강정호이사가 삼청하고 나머지 이사 전원 찬성하므로 가결이 되다.

(4) 이사장은 이사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서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불임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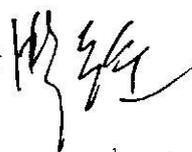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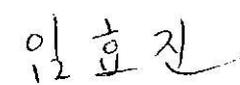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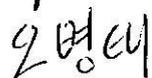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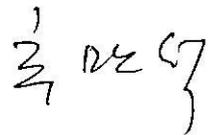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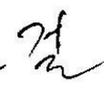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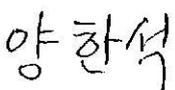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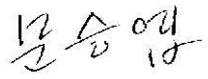
(5) 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오병태이사가 이사장, 양상백,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이순걸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25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19. 6. 27.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사장	박 동 순		이 사	임 효 진	
이 사	오 병 태		이 사	추 만 석	
이 사	양 상 백		이 사	이 순 걸	
이 사	강 정 호				
감 사	양 한 석		감 사	문 승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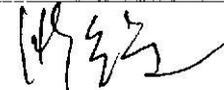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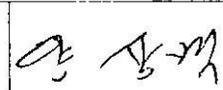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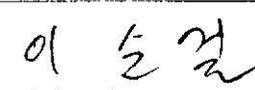
동서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1) 교원인사규정 개정 사유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강사에게 준용되는 임용,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짐에 따라 교원인사규정 개정

(2)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 2 조(교원의 종류) ①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 ④ 생략 ⑤ 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대우교수, 연구교원, 강의전담교원, 객원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로 하며 인사규정은 따로 정한다. ⑥ - ⑦ 생략 <신설>	제 2 조(교원의 종류) ①— 전임교원과 강사, — ————— ② - ④ 생략 ⑤ ————— —————,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으로 하며 ————— ⑥ - ⑦ 생략 ⑧ 강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자구 수정 자구 수정 ⑧항 신설
<신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